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2
----------	-----

2023. 6. 1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위원회 대안으로 함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행정안전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요청에 따라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 항목을 삭제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자어를 한글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촉 결격 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항목을 삭제함(안 제6조제2항제2호)

나. 한자어를 한글로 정비함

- 1)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2항)

- 2) ‘야기하여’를 ‘일으켜’로 수정함(안 제6조제3항제4호)
- 3)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수정함(안 제7조), (안 별지 3 제12호)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4. 7. ~ 2023.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 「아동복지법」 제14조1)에 근거하여 집행부는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바, 그 기능을 보면 ‘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 실시 ②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및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지원 등 아동급식 위원회 임무수행 ③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현황 파악 ④ 아동복지에 필요한 관련 업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현행 조례 제2조)

-
- 1)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위와 같이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는 아동위원은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①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
- 다만 아동위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① 피성년후견인과 ② 피한정후견인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④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촉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일종의 결격사유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결격사유로 무방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되지만 일정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일정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로서 사전적·사후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논거로 일률적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주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여 관련 조례의 정비를 요청한 바 있음.(2021.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
- 금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조례 정비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아동위원 결격 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음.
- 다만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피한정후견인이 사후적으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와 제4호에서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해촉 대상 및 절차) ③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아동위원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아동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질 의 : 아동위원협의회가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 답 변 : 동별로 구성은 아니고, 구 단위로 구성. 다만 전체 인원 중 동별 4명 이내로 제한함. 동장이 4명 이내로 추천하며 구에서 구성함.
- 질 의 : 제7조 위원의 정수 조문을 보면, “동별로 4명 이내로 70명의 범위에서 해당 주민센터,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70명이라는 제한은 불필요해 보이는데 삭제 제안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 답 변 : 전체 아동위원협의회의 “70명 범위 내” 문구는 삭제해도 무방. 의원 의견에 찬성
- 질 의 : 조례에 정기회의가 연 4회로 규정되어 있음. 회의의 역할과 성과는 무엇인가
- 답 변 :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하반기에 2회 회의를 했으며 아동급식대상자에 대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급식 모니터링을 진행함.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과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협의회의 주요 업무

7. 토론 요지

- 구청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외에 현실적인 아동위원협의회 운영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상정·안건 처리함
 - 위원 해촉 사유 제6조제3항제4호 조문
 - 전체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정수 규정 제7조 조문

8. 심사 결과 : “위원회 대안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관련의안번호
제202호

발의일자 : 2023. 6. 13.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행정안전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요청에 따라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 항목을 삭제하고 한자어를 한글로 정비하는 조례안이 제출됨
- 아동위원협의회 실질 운영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해촉 사유와 정수의 조문 중 중복적이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추가적으로 정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로 수정함
(안 제6조제3항제4호)
- 전체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정수 범위를 삭제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4. 7. ~ 2023.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를 “물의를 일으켜”로 한다.

제7조 중 “하되, 70명의 범위에서”를 “하되,”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u>하되, 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③·④ (생략)</p> <p>제6조(위·해촉 대상 및 절차)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p> <p>1. (생략)</p> <p>2. <u>피한정후견인</u></p> <p>3.·4. (생략)</p> <p>③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u> 아동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p> <p>5. (생략)</p> <p>④ (생략)</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하며, 한 차례만</u> ----- -----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해촉 대상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3.·4.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물의를 일으켜</u> ----- ----- -----</p> <p>5.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의 정수) 위원的人数은 동 주민센터별로 4명 이내로 <u>하</u> <u>되</u>, <u>70명의 범위에서</u> 해당 동 주민센터의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u>참작하여</u> 위촉한다.</p>	<p>제7조(위원의 정수) ----- ----- <u>하</u>되, ----- ----- <u>고</u> <u>려</u>하여 -----.</p>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2013. 4. 5.>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실시
2.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및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지원 등 아동급식 위원회 임무수행
3.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현황 파악 <개정 2009. 12. 18.>
4. 아동복지에 필요한 관련 업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센터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은 각각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총무 1명, 재무 1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 12. 18.>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12. 18.>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18.>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09. 12. 1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등 지원)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6조(위·해촉 대상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 7. 8.>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6. 7. 8.>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8.>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6. 7. 8.>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7. 8.>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 7. 8.>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7. 8.>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7. 8.>

③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아동위원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아동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9. 12. 18.>

④ 동장은 위·해촉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제7조(위원의 정수) 위원的人数은 동 주민센터별로 4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 주민센터의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9. 12. 18., 2016. 7. 8.>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